

2020년도 제1차 특정감사

**2019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2020. 1.

 **감사실**

'19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1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임직원 외부강의등의 운영절차에 따른 외부강의 준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 외부강의를 우회적인 금품 등의 수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민관 유착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방안 마련

□ 감사 근거

- 감사직무규정 제16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 2019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보고(감사팀-157, 2019.01.2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 대상 : 외부강의 신고현황 및 적정시행 등 이행분야 전반
- 감사 범위 : '19.7.1.~12.31.(하반기)
 -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제7항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감사실 ○○○ 외 2인
 - ○○○(반장), ◇◇◇, ☆☆☆
- (감사기간) 2020. 1. 9. ~ 1. 17. (7일간)

□ 감사 중점사항

-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 준수 여부
- 직무관련성 등 외부강의등에 해당여부 확인
-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 준수 여부
- 외부강의등 허용 강의 횟수, 근거 공문서 등 확인 점검
- 외부강의 시 복무관리 현황 점검
- 외부강의등 미신고, 사례금 부정수급 등 관련 리스크 점검
- 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및 개선 방안 마련

2

감사 결과

□ 감사 총평

- 대부분의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강의등에 대한 확인결과 일부는 출장·휴가·외출 등 근태기록 없이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사례 확인
- 또한, 외부강의등을 위해 출장명령 득하였으나 실제 외부강의일이 아닌 출장신청일(강의 1일전)을 출장일로 잘못 신청한 사례 확인
- 최종 결과, 총 2건(주의 1, 현지조치 1) 중 1건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을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1건에 대해 현지조치

□ 감사 지적사항 총괄

합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수범 사례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행정상 조치건수	재정상 조치금액	현지 조치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변상	시정	소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2	1	-	-	1	1	-	-	1	-	-	-	-	-	-	-	-	-	-	1	-

□ 분야별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목	처분 요구	지적내용	관련 부서
1	외부강의등 출강시 근태관리 미흡	주의	외부강의등 출강시 출장, 휴가, 외출 등 근태관리 없이 출강	★★★★
2	외부강의등 출강을 위한 출장 명령 오류	현지 조치	출장명령일을 출장일(외부강의 일)로 하고 출강(출장일 오류)	○○○○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제목	처분요구		관련부서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		
외부강의등 출강 시 근태관리 미흡	주의	1명	★★★★	-

○ 현지조치사항 명세

제목	처분 종류	관련부서	비고
외부강의등 출강 시 출장 명령 오류	현지 조치	○○○○	-